

Jisung Horizon Newsletter

August 2010 Vol.3. No.23

01 Vietnam LIVE!

- 외국인 투자법인의 베트남 건물소유권 취득방안
(변희경 변호사)

03 열려라 중국

- 중국, 국민의 민사권리에 대한 법적책임과 보호를 강화
- 2010년 발표한 <침권책임법> 중의 이슈에 관하여
(최금란 중국변호사)

06 생생 러시아

- 우크라이나 회사 관련 법제 III (채희석변호사)

09 주목! 이 판례

-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제조업 직접생산공
정업무의 불법파견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4 최신법령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관련 규정 개정 등
-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의무 확대

16 업무동향

- 경기도를 대리하여 국가 상대의 미군기지 '오염
토양정화 청구소송'에서 승소
- 8개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금호채권단을 대상으
로 한 CP 원리금 지급소송 업무 진행중
- KT를 대리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
-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지정
시설' 업무협약 체결

20 지평지성 단신

- 지평지성 변호사, 연극 '쉬어 매드니스(Shear
Madness)' 공연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지평지성
JISUNG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8, 11층
TEL: 02-6200-1600 FAX: 02-6200-0800 <http://www.js-horizon.com> E-mail: master@js-horizon.com
Copyright © JISUNG HORIZON Attorneys at Law All rights Reserved.

(Vietnam LIVE!)

외국인 투자법인의 베트남 건물소유권 취득방안



변희경 변호사

외국회사가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산, 특히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의 베트남 건물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내용이 있어 간략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베트남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 소속 근로자의 주거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거목적 외의 일반 건물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해당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법률 해석상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한 후 해당 건물에서 제조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신축, 개축, 리모델링 등 개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9년 연말에 주거용건물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증서 등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절차 등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법인이 건물소유권증서 발급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필요서류를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기존건물을 취득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

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투자법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업목적에 기재된) 투자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ii) 기존건물을 매입, 증여, 교환, 상속 기타 법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관한 서류의 제출만 요구하고 있을 뿐 투자허가서의 제출은 명시적으로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새로운 시행령이 기존에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해석, 즉 제조업 또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에만 그 사업목적상 부합하는 한도에서 일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해석을 포기하고 외국인 투자법인은 위 새로운 시행령에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주거 목적 외의 일반 건물에 대하여도 특별한 제한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인 지가 문제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제조업 또는 부동산개발업 이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법인도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새로운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건물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 수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의미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새로운 시행령 발효 후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고, 또한 제조업 또는 부동산개발업 이외의 영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위 새로운 시행령에 기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증서를 발급받은 실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아직 법률적으로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건물취득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통한 면밀한 사전검토 및 확인작업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열려라 중국)

중국, 국민의 민사권리에 대한 법적책임과 보호를 강화 - 2010년 발표한 <침권책임법> 중의 이슈에 관하여



최금란 중국변호사

1. 서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제도는 민사상의 기본적인 손해배상책임법률로 국민과 법인의 생명권, 건강권, 인신자유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물권, 지적재산권 등의 민사권리와 이익을 보장하여 경제질서와 사회안정의 유지를 도모하는 기본 법률제도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한 중국의 불법행위규제법인 <침권책임법(侵權責任法)>은 <물권법> 이후 민법전의 또 다른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2. <침권책임법> 중 민사권리에 대한 법적보호

<침권책임법>은 7년의 시간 동안 4차례의 심의를 거쳐 발표된 총 12장 92조로 구성된 법률로써 기존에 법으로 규정이 없었던 내용을 처음 도입하였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동명동가(同命同價)'의 배상원칙은 권리평등을 구현함

동명동가의 원칙은 <침권책임법>이 확립한 평등 체현의 주요 원칙입니다. 침권책임법이 시행되기 전 중국은 대형 교통사고, 광산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한 자에 대한

배상의 기준을 조난자의 호적 소재지에 따라 확정하였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인의 '동명부동가(同命不同價)'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 규정된 <침권책임법> 제17조에 따르면 동일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각 사망자의 사망배상금을 동일한 액수로 확정하게 됩니다. 즉 동 규정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 광산사고를 처리할 때 도농 간의 차별 없이 통일된 기준 및 액수에 따라 사망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 적용의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동일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망배상금'만을 동일하게 산정하며 기타 항목에 차이를 둬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률의 평등을 체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손해배상금 대한 확정

<침권책임법>은 중국 법률 역사상 처음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침권책임법> 제22조에는 '타인의 인신권을 침범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조성한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첫째, 정신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인신권의 침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신권에는 생명권, 건강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포함하지만 재산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둘째,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손해' 수준에 도달해야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불법행위 책임 및 개인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에 대한 보호

최근 십여 년간 인터넷 기술의 빠른 보급과 함께 누리꾼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인터넷산업에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이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의 민사 권리 침해 현상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마녀사냥' 등으로 대표되는 익명성에 기반한 개인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중국에서 일련의 행정법규와 사법해석을 발표하여 인터넷상의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기본 법률측면에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규정이 결핍되어 있던 중 <침권책임법>이 등장하여 인터넷 불법책임 법률규정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침권책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리에 손해를

주는 경우, 해당 인터넷 사용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침권책임법>의 규정에는 인터넷 불법책임뿐만이 아닌 기타 측면에서의 규정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침권책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유출하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공개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4)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한 리콜제도와 징벌적 배상

<침권책임법>은 처음으로 법률 중에 하자 있는 제품의 리콜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동 법률의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품을 유통한 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 생산자와 판매자는 반드시 경고, 리콜 등의 사후구제조치를 취해야 하며 적시에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구제조치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유발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동 법률은 처음으로 징벌적 배상제도(각주1)를 도입하였습니다. 동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 줄 알면서 생산 및 판매를 진행하여 타인의 사망을 유발하거나 또는 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 피해자는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맺는 말

<침권책임법>은 그 외에도 의료분쟁 해결,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 동물로 인한 손해, 미성년자 특수 단체에 대한 보호, 부실 공사에 대한 엄격 책임원칙 등 서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각 방면에서 사회적 모순을 전면적으로 해결하고, 민사분쟁을 감소시키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적극적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각주]

1. 징벌적 배상이란 징계성 배상이라고도 하는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실제 손실액을 초과하는 금전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보상, 징벌, 저지 등 기능을 종합한 배상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JS-Horizon

(생생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사 관련 법제 Ⅲ



채희석 변호사

■ [관련링크 : 우크라이나 회사 관련 법제 \(지평지성 뉴스레터 2010. 6월호\)](#)

■ [관련링크 : 우크라이나 회사 관련 법제 Ⅱ\(지평지성 뉴스레터 2010. 7월호\)](#)

지난 회에서는 우크라이나 회사 관련 법제의 일반적인 사항과 주식회사 관련제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유한회사 관련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러시아나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역시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는 유한회사입니다. 다만 유한회사의 주요 내용은 주식회사와 대동소이므로, 아래에서는 유한책임회사와 관련된 규정 중 주식회사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 일반 사항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은 자본금에 대한 비율의 형태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증권위원회에 대한 등록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10인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

원이 10인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당해 유한책임회사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사하게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1.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1인회사는 다른 1인회사(외국회사 포함)에 의하여 설립될 수 없습니다.
2. 개인 혹은 법인(외국회사 포함)은 2 이상 우크라이나 유한책임회사의 1인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외국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유한책임회사는 우크라이나에 소재하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4.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최저임금의 100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2009년 12월 1일의 경우 최소 자본금은 UAH 66,900(USD 8,688 가량)이었습니다.

(2) 사원총회

유한책임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원총회입니다. 각 사원은 자본금 중 자신의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사원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지분총수의 60% 이상의 참석이고, 의결정족수는 참석한 지분의 단순 과반수입니다. 다만 아래 사항의 경우 전체 지분(사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분 포함)의 단순 과반수에 의하여 결의되어야 합니다.

1. 정관의 변경
2. 유한책임회사의 주요 목적 결정
3. 사원의 제명

(3) 경영기구

유한책임회사의 경영기구(집단 경영기구) 또는 이사(단독 경영기구)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회사 경영기구의 형태와 경영기구 위원의 수는 정관을 통하여 사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혹은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사의 일상업무를 담당합니다.

(4) 감사위원회

사원 중 일부 혹은 그 대리인에 의하여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JS-Horizon

(주목! 이 판례)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의 불법파견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들어가며

기존에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구 파견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법이 정하는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어 왔으나, 개정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은 제6조의 2에서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파견법상 '고용의제'의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비록 파견법이 개정되어 '고용의제'가 '고용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2007년 7월 이전에 이미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여전히 구파견법상의 '고용의제' 적용여부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예스코(구 극동도시가스)사건(대법원 전원합의체 2008.9.18. 선고 2007두22320 판결)에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범위의 해석에 있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적용을 긍정하여 구 파견법상의 '고용의제' 조항을 둘러싼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들을 구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 허용된 업무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 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대상판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도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동일한 취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판결의 사회적 파장이 큰 것은 그 결론이 아니라, 판결이유의 사실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규모 제조업체의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고용형태가 '도급'이냐, '파견'이냐에 대한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제조업체, 특히 자동차 노사는 사내하청의 고용형태를 놓고 '파견'이냐, '도급'이냐 논란을 벌여 왔습니다. 그 핵심은 누구를 하청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노동계는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라면서, 생산관리부터 노무 지휘까지 모든 것을 사실상 관리하는 원청업체가 진짜 사용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자동차 업계에서는 독립된 업무의 완성을 위한 "도급계약"이므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채용한 하청업체가 사용자라고 대응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업체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여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구)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와 달리 위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의 법리와는 달리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참가인이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 또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파견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사실관계의 요지

이 사건의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원고들(사내하청 근로자)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참가인(현대자동차)의 사업장에 파견

되어 참가인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①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의장공정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② 원고들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참가인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배치되어 참가인 소유의 생산 관련 시설 및 부품, 소모품 등을 사용하여 참가인이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부품의 식별방법과 작업방식 등을 지시하는 각종 작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는 없었다.

③ 참가인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직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 방법, 작업 순서 등을 결정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또는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의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되어 그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의 작업지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 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해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

④ 참가인은 원고들 및 그 직영근로자들에 대하여 시업과 종업 시간의 결정, 휴게 시간의 부여, 연장 및 야간근로 결정, 교대제 운영 여부, 작업속도 등을 결정하였다. 또 참가인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산재,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그 결원을 대체하게 하였다.

⑤ 참가인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상황, 인원현황 등을 파악·관리하였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2008년 예스코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것이지만, 실제 대규모 제조업체에서 널리 관행화된 사내하청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근로자 파견'으로 파악한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즉 제조업체의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구 파견법상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이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으로 진행되고, 지휘명령이 사내하청업체의 현장관리인을 통해 이뤄졌어도 사실상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소송을 제기한)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는 현대차의 직접적인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습니다.

첫째. 그동안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는 비용절감과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사내하청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사용 관행에 대해 대법원이 "파견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조업체의 사내하청을 통한 인력운용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 판결은 구 파견법상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원청업체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 파견법상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노조(사안에서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으며, 향후 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제도가 사내하청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대상판결로 피고보조참가인인 현대자동차는 직접적으로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구 파견법상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정규직과의 임금차액'을, 2년 이상 근무하고 해고된 사내하청 근로자는 '임금차액 외에도 해고된 날로부터 정규직에 적용되는 임금 전액'의 지급을 요

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 소송을 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뿐 아니라 부품·전자·철강·조선 등 전체 제조업 사내하청 근로자에 적용되어 대상판결의 적용을 받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와 퇴직자·해고자들이 체불임금 청구의 집단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실제로 7월 26일 금속노조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동판결의 적용을 받는 구 파견법하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모아 체불임금 청구의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5. 맺으며

대상판결은 제조업체에서 널리 관행적으로 사용한 사내하청의 고용형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노동계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파견법에서는 2년 이상 근무하여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뿐(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46조 제2항),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가 아니어서 그 파급력이 기존 구 파견법상의 2년 이상 근무자에게 한하여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체의 사내하청의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이상 이를 시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제조업체 실무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반대로 불법도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고용주기를 2년 이내로 단축하여 운용하거나, 공정의 모듈화 확대를 통한 기술대체가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업체에서 사내하청 대신 제조공정 자체를 사외 외주화로 전환할 소지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JS-Horizon

(최신법령)

1.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관련 규정 개정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2297호, 2010. 7. 26. 시행)

1.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의무가 법률로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 제2조 제8항을 개정하여 그 대상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관련 정보와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가 위 제공강요 금지의무의 대상으로 되어, 향후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수급사업자의 구두계약 확인요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하도급계약추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를 개정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 및 그 통지나 회신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가 주소 등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구두계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다운로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2297호, 2010. 7. 26. 시행\)](#)

2.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298호, 2010. 7. 21. 시행)

1. 시행령 제5조 제2항을 개정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49에서 100분의 44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업 및 금융기관 이용자들의 금리부담이 완화되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운로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298호, 2010. 7. 21. 시행\)](#)

3.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의무 확대

: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 제10373호, 2010. 10. 24. 시행)

1. 종래 원고가 대한민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을 두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었으나, 그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을 신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 제10373호, 2010. 10. 24. 시행\)](#)

JS-Horizon

(업무동향)

경기도를 대리하여 국가 상대의 미군기지 '오염토양정화 청구소송'에서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오염토양정화 청구소송'에서 "오염토양 정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양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지상물 지하의 매설물과 위험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고 11일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 소송에서 경기도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동안 미군기지에서 시작된 기름 유출로 인근 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경우 국가가 지자체에 해결 비용을 줘야 한다는 판결은 있었지만, 국가가 미군기지 터를 반환하기 전 토양 오염을 원상회복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판결은 처음으로, 중금속 등 각종 위험 물질로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해 국가에 그 정화 책임을 지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 경기도 '미군부대 토양정화' 국가 상대 승소 (2010. 8. 12)
- 뉴시스 - 법원 "국방부, 반환 미군기지터 오염정화 의무" (2010. 8. 10.)
- 한겨레신문 - "지자체 반환 미군기지터 국방부에 오염정화 의무" (2010. 8. 12.)
- 세계일보 - 경기도, '미군부대 토양정화' 국가 상대 승소 (2010. 8. 12.)
- 서울경제 - 법원 "국방부, 주한미군 토지 오염정화 의무있다" (2010. 8. 12.)

[담당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JS-Horizon

(업무동향)

8개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금호채권단을 대상으로 한 CP 원리금 지급소송 업무 진행중

우리은행을 비롯한 8개 은행은 지난 7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금호타이어 채권단을 대상으로 CP 원리금을 지급하라는 어음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8개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금호채권단을 대상으로 한 CP 원리금 지급소송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이데일리 - 8개 금융사 "금호타이어 CP 원리금 지급하라" 소송 (2010. 7. 23.)

[담당변호사]



우승원 변호사 이상윤 변호사 성보석 변호사

JS-Horizon

(업무동향)

KT를 대리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

지난 8월 6일, 대법원은 KT로부터 계약해지 및 공급받은 단말기 대금 지급을 요구 받게 된 A씨가 KT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KT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A씨 손을 들어주는 등 엇갈렸던 판결을,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가 원심을 깨고 KT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 소송에서 KT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김지홍 변호사와 정원 변호사는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대법원에서 3건의 파기환송판결을 받아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뉴시스 - KT, 못 판 휴대폰 대금 소송 勝 (2010. 8. 6.)
- 세계일보 - 대법 "휴대폰 대리점, 문 닫아도 단말기 값은 물어야" (2010. 8. 6.)
- 헤럴드경제 - 이통사와 계약 깨진 대리점 다 못판 휴대폰은? (2010. 8. 6.)

[담당변호사]



김지홍 변호사



정원 변호사

JS-Horizon

(업무동향)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지정시설'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7월 13일 논현동 건설회관 광제회 회의실에서 '제 2차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지정시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지정시설' 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문화·생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협약에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을 포함하여 신한카드, 경희의료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제너두, 금호리조트 등 17개 기업이 참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노무법인 길 및 미래노무법인과 함께 고용·임금·산재에 관한 상담 및 행정상 청구·행정심판·소송의 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관련링크]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관련기사]

- 건설경제신문 - 건설근로자 복지이용시설 더 늘어난다 (2010. 7. 13.)
- 건설경제신문 - <근로자복지 캠페인> '지정' 복지시설·서비스 확대 (2010. 7. 20.)

[담당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김성수 변호사



배동희 공인노무사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지평지성 변호사, 연극 '쉬어 매드니스(Shear Madness)' 공연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김태형, 장품, 서준희, 이유경 변호사는 지난 7월 15일과 29일, 대학로 상명아트홀에서 공연 중인 관객참여형 폭소추리극 '쉬어 매드니스(Shear Madness)'에서 4명의 용의자를 변론하는 변호인으로 참여해 열연하였습니다.

2006년 초연 이후 장기 공연 중인 '쉬어 매드니스'는 이발소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의 범인을 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찾는 과정을 담아낸 코믹 추리 연극으로 현재 대학로 상명아트홀 1관에서 오픈런으로 공연 중입니다.

[관련기사]

- 한국경제(PDF) - 연극무대 선 지평지성 신입 변호사들 "가상 공개변론 경험 도움돼요" (2010. 7. 21.)
- 국민일보(PDF) - 어! 연극에 진짜 변호사님 나왔네 (2010. 7. 19.)
- 한겨레(PDF) - 법정보다 연극부대가 더 떨려요 (2010. 7. 13.)
- 연합뉴스 - <사람들> 연극서 변호사역 맡은 진짜 변호사 (2010. 7. 13.)



법무법인 지평지성, 연극 '쉬어 매드니스' 공연 (2010. 7. 15. / 7. 29.)

JS-Horizon



지평지성
JISUNG HORIZON

<http://www.js-horizon.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1600 Fax : 02)6200-0800

강북 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00-1800 Fax : 02)6200-0830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0880 Fax : 02)6200-0804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

캄보디아 사무소

SK-Shinah Office, 2F No.797, Monivong Blvd. & St. 484, Phsar Doeum Thkov, Khan Chamkarmon, Phnom Penh, Cambodia Tel : 855-23-726-897 Fax : 855-23-726-457

라오스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rict, Vientiane, Laos Tel : 856-20-301-9820 Fax : 856-21-264-344